

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. 10. 17 선고 2019가단509 판결 [압류등기말소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대한민국

변론 종결 2019. 9. 26

판결 선고 2019. 10. 17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공주시 B 임야 1,330㎡ 중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. 11. 16.

접수제33023호로 마친 3번C지분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갑 제1,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공주시 D 임야 13,488㎡(이하'이 사건 분할 전 토지'라고 한다)는 원고가 1/10지분,이 3/85지분 등으로 공유하고 있었던 사실, 피고는 2017. 11. 16. C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C의 위 지분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마친 사실, 원고는 C 등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가단147호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분할을 청구하였고,위 법원은 2018. 8. 9. 이 사건분할 전 토지 중 공주시 D 임야 12,158㎡ 는 C 등이 공유하고,B 임야 1,330㎡ (이하'이 사건 토지'라고 한다)는 원고의 소유로 분할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,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C 등의 지분 전부가 원고에게 이전등기 되었는데, C의 위 지분에 대한 피고의 압류등기도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에 기재된 사실이 인정된다.

2. 원고의 주장

원고는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었는데, C의 지분에 대한 피고의 압류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할 것이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압류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.

3. 판단

부동산의 공유지분 위에 마쳐진 압류등기는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공유물분할이 된뒤에도 종전의 지분비율대로 공유물 전부의 위에 그대로 존속하고 압류채무자인 공유자에게 당연히 집중되는 것은 아닌바(대법원 1989. 8. 8. 선고 88다카24868판결 취지참조),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C의 지분 위에 마쳐진 피고의 압류등기는 공유물분할이 된 뒤에도 그 지분비율대로 이 사건 토지의 위에 그대로 존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, 원고가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압류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할 수 없고, 달리 위 압류등기를무효로 볼 근거가 없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,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판사 이지웅